



인·허가 및 지원절차 안내

여기에 실은 인허가 및 지원절차 안내는 지난 7월 19일 aT센터에서 산림청이 주최한 제1회 산주와의 만남 행사 교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실

가. 영림계획 작성 절차 안내

목 적	○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에 대한 장기간의 종합계획인 영림계획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 사항 ○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 영림계획작성기간 : 10년 계획기간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지원단가 : 8,102원/ha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자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체 가입산림 ②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임업용산지 ④ 기타 산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영림계획 작성 권장(시·군) ○ 영림계획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림소유자) ○ 보조금 교부(시·군)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주 → 시·군 · 영림계획 작성 권장 · 영림계획 작성 및 인가신청 · 영림계획 인가 · 경비보조신청 · 경비지급
신청자격	○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2004년 사업계획	○ 사업량 : 100천ha ○ 사업비 : 810백만원 (국비405, 지방비405)
담당과	산림정책과장 : 서기관 최대순 (☎ 042-481-4130) 계장 : 행정사무관 이문원 (☎ 042-481-4131) 담당 : 임업주사 이상인 (☎ 042-481-4212)

나. 입목벌채 허가(신고) 절차

입목벌채 실 태	○ 입목벌채는 산주가 시장·군수로부터 벌채허가(신고)를 받아 직접 벌채하거나, 벌채업자가 산주로부터 입목을 매입 또는 위탁받아 벌채를 하고 목재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음
입목벌채 기 준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생태적으로 건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능선부·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수확을 위한 벌채는 입목의 평균수령이 기준별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실행.
입목벌채 방 법	○ 영림계획에 의한 입목벌채(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 - 영림계획에 의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 사업신고서”를 사업착수 7일전까지 제출하면, -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통보함. ○ 허가에 의한 입목벌채(산림법시행규칙 제85조) - 입목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벌채구역도를 첨부한 “입목벌채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 시·군에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기준별기령 및 벌채기준” 적합여부, 산림법 또는 타 법령과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함 ○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 -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입목벌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검토 확인 후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 ○ 임의로 하는 벌채(산림법시행규칙 제49조) - 벌채허가(신고)의 예외로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등 12가지 유형은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 가능함
담당과	임산물이용과장 : 서기관 배정호 (☎ 042-481-4200) 계장 : 행정사무관 민한기 (☎ 042-481-4205) 담당 : 임업주사보 전찬기 (☎ 042-481-4204)

라. 용자금 및 보조금 신청 절차

사업신청	○ 사업전년 1월 20일까지 시·군(보조사업), 산림조합(용자사업)에 신청						
대상자결정	○ 사업당년 1월 15일 이전 시·군(산림조합)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공지						
보조금 및 용자금수령	○ 대상자로 확정된 임업인등은 사업실행 후 소요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용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사업실적 확인 후 대출 실행 - 시·군(보조금 교부) - 산림조합(용자금 대출)						
관련서류 (용자금 신청관련 서류)							
단 계	서 류 명	임업인		개인사업자		법인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신용	담보
교부서류	○ 산림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신용조사 대상	○ 사업현황서	×	×	○	○	○	○
	○ 최근2기 결산제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세무서확인분)	×	×	○	○	○	○
	○ 합계잔액시산표(최근 월말분)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	×	×	×	○	○
감정의뢰 대상	○ 담보물건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임야, 임목)	×	○	×	×	×	○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 (예정지)증명서	×	○	×	×	×	○
	○ 공장의 경우 기계·기구목록	×	○	×	×	×	○
근저당설정 대상	○ 인감증명서	×	○	×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	×	○	×	○
	○ 화재보험증서(건물, 임목, 공장)	×	○	×	○	×	○
	○ 지상권설정계약서 (나대지, 임목담보)	×	○	×	○	×	○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
대출실행시	○ 금전소비대차약정서	○	○	○	○	○	○
	○ 인감증명서	×	○	×	○	○	○
	○ 지급보증서등	×	○	×	○	×	○



마. 산주 사업별 용자규모 및 조건

(단위 : 천원)

사업명	자금성격	2004년계획	이자율	용자기간		비고
				거치	상환	
합계		98,183,692	%	년	년	
○ 산림소득종합자금		33,000,000				임산물이용과
- 시설장비지원 (표고, 밤, 가공시설 등)	시설	10,000,000	4	3~5	5~7	"
- 운영지원자금 (복합경영, 표고, 조경수 등)	운영	23,000,000	4	3~10	2~7	"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시설	1,036,000	4	3	7	"
○ 임산물이용가공 원자재구입	운영	8,282,260	5.5	3	2	"
○ 임산물유통센터	"	2,499,956	4	3	2	"
○ 합판보드류시설	시설	3,500,000	5.5	3	7	"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운영	3,040,000	4	2	3	국제협력 담당관실
○ 조립용 묘목생산	()	1,499,850	4	3	2	산림자원과
○ 국내조림	()	500,796	3	5~20	5~15	"
○ 육림	()	299,880	3	10~20	5~15	"
○ 임업기계화	()	200,000	4	3	7	경영지원과
○ 사유임도시설	시설	1,515,960	3	10	10	치산과
○ 해외조림	운영	9,539,190	3	7~25	3	국제협력 담당관실
○ 산림조합육성	"	20,440,000	3	3	2~7	산림정책과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	()	12,000,000	3	5~20	10~15	경영지원과
○ 산지목재비축지원	운영	829,800	3			임산물이용과

※ 자금성격란()는 운영 및 시설자금이 공유하고 있는 사업임

※ 산림소득종합자금 : 15개사업을 2개자금(시설·장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통합운영 (300억원)

- 시설장비자금(100억원) : 표고재배사, 밤작업로, 가공시설등 7개사업

- 운영자금(200억원) : 복합경영, 표고생산, 조경수, 분재생산등 8개사업

바. 임업세제지원 현황

세 목	감 면 내 용	관 련 조 문
소득세	○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립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조립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별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상속세	○ 보전산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립한지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포함)를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시 2억원 추가 공제 ※ 영농상속자 : 만18세이상, 2년전부터 영농(영림)종사,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증여세	○ 보전산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지역에 따라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 포함)로서 29만7천㎡ (조립기간이 20년이상 99만㎡)내의 산림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 보전산지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와 특별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는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 제4항 제13호
담당과	경영지원과장 : 서기관 류광수 (☎ 042-481-4190) 계장 : 행정사무관 진헌무 (☎ 042-481-4193) 담당 : 임업서기 최문기 (☎ 042-481-4194)	



사. 대리경영사업 안내

개념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경영체가 자기자본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산림경영 일체를 대신 실행해 주는 사업 ○ 경영방치된 산림의 계획적 육성으로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사 및 영림계획의 작성 ○ 영림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활동 ○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의 제공등 ○ 기타 산림소유자가 위탁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판매 및 알선등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소유자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산림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대상지역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지를 선정.(기업림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업진흥촉진지역 ② 임업용산지 ③ 기타 대리경영을 희망하는 산림 ○ 대리경영임지는 가급적 집단화되도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번 및 위치 표시 (지형도 1/5000)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경영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림소유자가 위임한자 포함)와 산림조합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산림 소유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 계약기간은 산림경영의 효과를 감안하여 5년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대리경영사업계약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매매, 담보제공, 양도, 상속 등)을 제한하지 못함
산림사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벌채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량산출, 판매예상액, 판매·알선 및 대금정산 방법등을 알려줌. ○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알려줌. ○ 산림사업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해줌.
담당과	<p>경영지원과장 : 서기관 류광수 (☎ 042-481-4190) 계장 : 임업서기관 고기연 (☎ 042-481-4191) 담당 : 임업주사보 안영섭 (☎ 042-481-4192)</p>

아. 독립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선정· 선발권자
독립가	모범	소유산림이 3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 이상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이 1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50ha 이상(유실수의 경우는 20ha 이상)	시·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20ha 이상, 조림실적 10ha 이상으로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5년 이상이 된 자 또는 조림면적 10ha 이상(유실수의 경우는 5ha 이상)	시장·군수
	법인	소유산림 500ha 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 이상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세 미만의 자로서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독립가의 자녀 - 5ha 이상 산림소유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명의 포함) - 10ha 이상 국·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 -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 	시장·군수
담당과		경영지원과장 : 서기관 류광수 (☎ 042-481-4190) 계장 : 임업서기관 고기연 (☎ 042-481-4191) 담당 : 임업주사보 안영섭 (☎ 042-481-4192)	



자. 독립가·임업후계자 지원현황(2004년)

사업명	사업량	단위	소요자금		
			총 사업비	용자	자부담
계	120	명	12,000,000	12,000,000	-
독립가	50	명	5,000,000	5,000,000	-
임업후계자	68	명	6,800,000	6,800,000	-
신지식임업인	2	명	200,000	200,000	-

□ 용자조건

사업명	구분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장기수사업	3%	35년	20년	15년	○ 독립가 사업당 3억원 이내 ○ 임업후계자 사업당 2억원 이내 ○ 신지식임업인 사업당 1억원 이내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
	임도시설		20년	10년	10년		
	자연휴양림		20년	10년	10년		
	기 타		15년	5년	10년		

담당과	경영지원과장 : 서기관 류광수 (☎ 042-481-4190) 계장 : 임업서기관 고기연 (☎ 042-481-4191) 담당 : 임업주사보 안영섭 (☎ 042-481-4192)
-----	---

차. 임업기계화 및 영세율 적용

<p>목 표</p>	<p>○ 우리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추진</p>
<p>기계·장비지원</p>	<p>○ 지원대상자 - 구입자금 :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경영자 등으로서 산림경영장비구입 희망자 - 생산자금 : 한국임업기계화협회에 등록된 임업기계생산업체로서 신규 임업기계개발 희망업체</p> <p>○ 지원규모 - 구입자금 : 50백만원 한도내에서 장비구입비의 70% 지원 - 생산자금 : 100백만원 한도내에서 생산자금의 70% 지원</p>
<p>영 세 율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15종)</p>	<p>○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 포함),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 포함), 임업용 윈치,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타워야더, 포워드,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임내차, 밤수집기, 자동지타기.</p>
<p>면 세 유 류 구입 대상 임업기계10종</p>	<p>○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임업용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 임내차, 타워야더</p>
<p>담당과</p>	<p>경영지원과장 : 서기관 류광수 (☎ 042-481-4190) 계장 : 임업사무관 황육성 (☎ 042-481-4195) 담당 : 임업주사 심명진 (☎ 042-481-4196)</p>